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5947 판결 [건물명도 및 대여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26.

판결 선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1) 2,5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10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2) 1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2. 9.부터 2024. 8. 1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
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중래

별지